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21호

「주택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주택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주택법 제16조제8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를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시행령 제16조”를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1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를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를, 주택법령에 따라 표본설계도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관리계획서 작성) 품질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적합하게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작성하여야 한다.

-----  
-----  
-----  
-----시행령  
제29조-----  
-----.

제11조(품질관리계획서 작성) --  
----- 건설기술진흥  
법 제55조-----  
-----.